

8월세무일지



2007 사업자와 세금상식

이번호부터는 국세청에서 발간된 「생활세금시리즈」책자를 토대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세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글 쓰는 순서는 ①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②사업자와 세금신고, ③봉급생활자와 세금, ④주택과 세금, ⑤부동산과 세금, ⑥유익한 세금정보, ⑦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순으로 연재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 1 ~ 6. 30	예정신고	1. 1 ~ 3. 31	4. 1 ~ 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 ~ 6. 30	7. 1 ~ 7. 25	법인·개인사업자
제2기 7. 1 ~ 12. 31	예정신고	7. 1 ~ 9. 30	10. 1 ~ 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 1 ~ 12. 31	다음해 1. 1 ~ 1. 25	법인·개인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총괄납부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8월세무일지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매출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 × 업종별부가 가치율 ×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2007년	2008년
소매업	15%	20%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20%	20%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30%
음식업, 숙박업	30%	40%
운수 및 통신업	40%	40%

2. 소득세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음해 5.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간 7,500만원 미만의 모집수당만이 있는 자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주민세(소득세할)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장부의 비치·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 ▷ 간편장부 대상자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서비스업	7천 5백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도니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text{소득금액} =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 (부당 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3. 기준경비율제도

🔗 기준경비율제도란?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단순 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8월세무일지

☞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동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 종	'06 ~ '07년 귀속분	'08년 귀속분 부터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7,200만원	6,000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산업, 금융 및 보험업	4,800만원	3,600만원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600만원	2,400만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 ▷ 매입비용 :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 증빙서류의 종류

- 주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 받아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 매입비용 및 임차료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인건비 :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 납부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퇴직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연금소득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 반기별납부

- 반기별 납부대상자
 -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
-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12. 1 ~ 12. 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 1 ~ 6. 30

🌱 봉사료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유형업소, 안마사술소, 스포츠맛사지, 이용원 등의 접대부 포함) 등에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 세액
 -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전속계약금 또는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지역권·지상권 설정대가

8월세무일지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기타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주민세의 원천징수

-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소득할 주민세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폐업신고

-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폐업신로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세무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세가 계속 부과된다.
 -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폐업신

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 납부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시기	신고납부대상
1기(상반기) 중 폐업시	1. 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2기(하반기) 중 폐업시	7. 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폐업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 납부

- 폐업 즉시 사업장 고나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폐업신고 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 1. 1~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